

의안번호	2203710
의 퇴 인	한정애의원
회 답 일	2024.10.16.
추계번호	24D355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2조(재판지연의 보상 청구) 신설	－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한 당사자는 요청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지연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상 청구는 소송 계속 중인 법원의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하여야 함	재량규정
2	안 제43조(보상의 결정) 신설	－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소송의 내용, 재판지연의 사유 등에 비추어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상당한 보상을 명하여야 하고, 결정의 절차나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등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2조(재판지연의 보상 청구)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3조(보상의 결정) 신설	

2. 상세 사유

□ 재판지연의 보상 청구 및 보상 결정(안 제42조 및 제43조 신설)

- 개정안에 따라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지연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게 되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현행법 제21조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를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해진 기간 이후에 선고된 건수를 살펴보면, 연평균 제1심은 67,233건, 항소심은 40,041건, 상고심은 2,193건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남

[표] 최근 5년간 현행법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판결 선고된 건수

(단위: 건)

구 분	제1심 (6월 초과)	항소심 (4월 초과)	상고심 (4월 초과)
2019년	52,929	34,687	2,411
2020년	64,439	37,914	2,043
2021년	76,700	40,142	2,134
2022년	71,315	43,094	2,088
2023년	70,782	44,370	2,289
합계	336,165	200,207	10,965
연평균	67,233	40,041	2,193

자료: 대법원

- 다만 현시점에서는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하는 건수 등을 추정하기 어렵고, 보상결정의 절차나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등이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재판지연 보상 건수 및 보상액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계가 곤란함

IV.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